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AA32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안내

※ 2024.12.20.(금) 공고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변경 전 입주자모집공고(46p) → 변경 후 입주자모집공고(46p)

■ 학교 관련 유의사항(변경 전)

학교	<p>■ 학교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 통학구역내 배치가능하나, 동 주택사업의 초등학교생은 가칭 검단12초(개교 미정)에 배치될 예정으로 개교가 연기될 경우 입학시기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검단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확보) 신설학교 개교 시기를 재검토 예정으로 개교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 학교 관련 유의사항(변경 후)

학교	<p>■ 학교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 조건부 인근학교 배치 가능(검단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신설학교 개교 시기를 재검토 예정으로 개교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삭제)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20.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066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20.(금)	2024.12.30.(월)	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8.(수)	2025.01.11.(토)~ 2025.01.15.(수)	2025.01.19.(일)~ 2025.01.21.(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트.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주민등록번호 위조 또는 절취를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 / 일반공급 1:2순위)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인천광역시 서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12.31. 개정된 2024.01.01. 시행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주민등록번호 위조 또는 절취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12.1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약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30.(월)	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8.(수)	2025.01.11.(토)~ 2025.01.15.(수)	2025.01.19.(일)~ 2025.01.21.(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33번길 1) 											
<p>※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p> <p>※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p> <p>※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p> <p>-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당첨된 주택의 구분</th> <th>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th> </tr> <tr> <td>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td> <td>10년</td> </tr> </table> <p>■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p> <p>■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p> <p>※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구분</th> <th>특별공급</th> <th>일반공급</th> </tr> <tr> <td>전매제한기간</td> <td>3년 (단,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td> <td></td> </tr> </table>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 19630호(2024.12.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8~15층 11개동 총 669세대
[특별공급 279세대(기관추천 42세대, 다자녀가구 60세대, 신혼부부 79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8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타입별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697	01	064.8400A	64A	64.8400	23.3500	88.1900	51.4500	139.6400	45.1797	112	112	11	11	20	3	21	66	46	9
	02	064.5700B	64B	64.5700	22.9700	87.5400	51.2000	138.7400	44.9916	26	26	2	2	4	-	4	12	14	2
	03	064.7800C	64C	64.7800	23.8000	88.5800	51.4700	140.0500	45.1379	9	9	-	-	1	-	1	2	7	1
	04	064.7100D	64D	64.7100	22.8700	87.5800	51.3000	138.8800	45.0891	66	66	6	6	11	2	12	37	29	5
	05	084.7800A	84A	84.7800	28.9100	113.6900	67.0800	180.7700	59.0736	43	43	4	4	7	1	8	24	19	3

06	084.9900B	84B	84.9900	29.2300	114.2200	67.2800	181.5000	59.2200	96	96	9	9	17	2	18	55	41	7	
07	084.8600C	84C	84.8600	29.5700	114.4300	67.2500	181.6800	59.1294	8	14	1	1	2	-	2	6	8	2	
		84C1	84.8600	29.5700	114.4300	67.2500	181.6800	59.1294	6										
08	084.9200D	84D	84.9200	28.9900	113.9100	67.2100	181.1200	59.1712	26	26	2	2	4	-	4	12	14	2	
09	084.8800E	84E	84.8800	28.8600	113.7400	67.1600	180.9000	59.1433	35	35	3	3	6	1	6	19	16	3	
10	084.8500F	84F	84.8500	30.4600	115.3100	67.3000	182.6100	59.1224	41	41	4	4	7	1	7	23	18	3	
11	098.9700A	98A	98.9700	33.7200	132.6900	78.3400	211.0300	68.9611	44	44	-	4	-	1	-	5	39	2	
12	098.9900B	98B	98.9900	34.3200	133.3100	78.4100	211.7200	68.9750	45	105	-	10	-	3	-	13	92	7	
		98B1	98.9900	34.0600	133.0500	78.3900	211.4400	68.9750	60										
13	098.9200C	98C	98.9200	34.4300	133.3500	78.3800	211.7300	68.9262	44	44	-	4	-	1	-	5	39	2	
14	110.9400P	110P1	110.9400	40.9400	151.8800	88.1300	240.0100	77.3016	1	6	-	-	-	-	-	-	-	6	-
		110P2	110.9300	40.3500	151.2800	88.0600	239.3400	77.2946	2										
		110P3	110.6900	41.1700	151.8600	87.9900	239.8500	77.1274	3										
15	110.8900S	110S1	110.8900	46.4400	157.3300	88.6400	245.9700	77.2668	1	2	-	-	-	-	-	-	2	-	
		110S2	110.5300	46.3200	156.8500	88.3700	245.2200	77.0159	1										
합 계									669	42	60	79	15	83	279	390	48		

※ 상기 타입 중 전용 "84C, 84C1, 98B, 98B1, 110S1, 110S2, 110P1, 110P2, 110P3"는 타입별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니, 청약 신청 시 전용 084.8600C(84C, 84C1), 098.9900B(98B, 98B1), 110.9400P(110P1, 110P2, 110P3), 110.8900S(110S1, 110S2), 균형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각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거실, 주방/식당, 안방, 침실1,2, 욕실1,2,3, 현관,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룸, 팬트리, 대형수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출입현관, 계단,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홀, 비상구, 로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실내정원, 게스트하우스-1,2, 공유마켓, 파티룸, 주민 운동시설, 재택오피스, 실내놀이터, 웰컴라운지, 맘스스테이션-1,2, PM보관소-1,2, 펫케어센터, 창고, 휴게라운지 및 공구보관실, 지하층 계단, 관리사무소, 경비실-1,2, 생활폐기물처리장,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우수저조관리, 발전기실/열교환실의 공용면적입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64.8400A	064.5700B	064.7800C	064.7100D	084.7800A	084.9900B	084.8600C		084.9200D	084.8800E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64A	64B	64C	64D	84A	84B	84C	84C1	84D	84E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8500F	098.9700A	098.9900B		098.9200C	110.9400P			110.8900S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84F	98A	98B	98B1	98C	110P1	110P2	110P3	110S1	110S2

※ 상기 타입 중 전용 "84C, 84C1, 98B, 98B1, 110S1, 110S2, 110P1, 110P2, 110P3"는 타입별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하니, 청약 신청 시 전용 084.8600C(84C, 84C1), 098.9900B(98B, 98B1), 110.9400P(110P1, 110P2, 110P3), 110.8900S(110S1, 110S2), 균형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입별로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일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		
										2025.05.15.	2025.09.15.	2026.02.19.	2026.06.15.	2026.10.15.	2027.02.15.			
064.8400A	64A	112	1층	5	163,245,000	284,755,000	-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2층	7	163,245,000	289,755,000	-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3~5층	26	163,245,000	294,755,000	-	458,0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37,400,000
			6~9층	36	163,245,000	298,755,000	-	462,0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10층~15층	38	163,245,000	303,755,000	-	467,0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064.5700B	64B	26	1층	1	162,042,000	274,958,000	-	437,0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131,100,000	
			2층	2	162,042,000	279,958,000	-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3~5층	6	162,042,000	283,958,000	-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6~9층	8	162,042,000	288,958,000	-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10층~14층	9	162,042,000	292,958,000	-	455,0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064.7800C	64C	9	2층	1	163,967,000	286,033,000	-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3~5층	3	163,967,000	291,033,000	-	455,0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6~9층	4	163,967,000	296,033,000	-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10층	1	163,967,000	300,033,000	-	464,0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064.7100D	64D	66	1층	4	162,116,000	276,884,000	-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층	4	162,116,000	280,884,000	-	443,0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3~5층	15	162,116,000	285,884,000	-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6~9층	20	162,116,000	289,884,000	-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10층~15층	23	162,116,000	294,884,000	-	457,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084.7800A	84A	43	1층	2	210,448,000	336,552,000	-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2층	2	210,448,000	341,552,000	-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3~5층	9	210,448,000	347,552,000	-	558,0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6~9층	12	210,448,000	352,552,000	-	563,0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10층~15층	18	210,448,000	358,552,000	-	569,0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70,700,000	
084.9900B	84B	96	1층	6	211,429,000	329,571,000	-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2층	6	211,429,000	335,571,000	-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3~5층	21	211,429,000	340,571,000	-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6~9층	28	211,429,000	346,571,000	-	558,0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10층~15층	35	211,429,000	352,571,000	-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084.8600C	84C	8	2층	2	211,817,000	339,183,000	-	551,0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4층	2	211,817,000	344,183,000	-	556,0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6층, 8층	4	211,817,000	350,183,000	-	562,0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84C1	6	3층, 5층	4	211,817,000	343,183,000	-	555,0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084.9200D	84D	26	7층	2	211,817,000	348,183,000	-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3~5층	6	210,855,000	343,145,000	-	554,0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6~9층	8	210,855,000	348,145,000	-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10층~15층	12	210,855,000	354,145,000	-	565,0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084.8800E	84E	35	1층	1	210,540,000	331,460,000	-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2층	1	210,540,000	336,460,000	-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3~5층	9	210,540,000	342,460,000	-	553,0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6~9층	12	210,540,000	348,460,000	-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10층~14층	12	210,540,000	353,460,000	-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084.8500F	84F	41	1층	1	213,446,000	331,554,000	-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2층	1	213,446,000	336,554,000	-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3~5층	9	213,446,000	342,554,000	-	556,0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
										2025.05.15.	2025.09.15.	2026.02.19.	2026.06.15.	2026.10.15.	2027.02.15.	
			6~9층	12	213,446,000	348,554,000	-	562,0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10층~15층	18	213,446,000	353,554,000	-	567,0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098.9700A	98A	44	1층	2	245,618,000	360,347,273	36,034,727	642,0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192,600,000
			2층	3	245,618,000	365,801,818	36,580,182	648,0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94,400,000
			3~5층	9	245,618,000	372,165,455	37,216,545	655,0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196,500,000
			6~9층	12	245,618,000	377,620,000	37,762,000	661,0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10층~15층	18	245,618,000	383,983,636	38,398,364	668,0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098.9900B	98B	45	1층	3	246,765,000	350,213,636	35,021,364	632,0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189,600,000
			2층	3	246,765,000	355,668,182	35,566,818	638,0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3~5층	9	246,765,000	362,031,818	36,203,182	645,0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3,500,000
			6~9층	12	246,765,000	367,486,364	36,748,636	651,0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195,300,000
			10층~15층	18	246,765,000	373,850,000	37,385,000	658,0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98B1	60	1층	4	246,284,000	346,105,455	34,610,545	627,0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188,100,000
	2층			4	246,284,000	352,469,091	35,246,909	634,0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190,200,000	
	3~5층			12	246,284,000	357,923,636	35,792,364	640,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92,000,000
	6~9층			16	246,284,000	364,287,273	36,428,727	647,0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194,100,000
	10층~15층			24	246,284,000	369,741,818	36,974,182	653,0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195,900,000
098.9200C	98C	44	1층	2	246,840,000	352,872,727	35,287,273	635,0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190,500,000
			2층	3	246,840,000	359,236,364	35,923,636	642,0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192,600,000
			3~5층	9	246,840,000	364,690,909	36,469,091	648,0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94,400,000
			6~9층	12	246,840,000	371,054,545	37,105,455	655,0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196,500,000
			10층~15층	18	246,840,000	376,509,091	37,650,909	661,0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110.9400P	110P1	1	15층	1	281,140,000	611,872,727	61,187,273	954,200,000	95,420,000	95,420,000	95,420,000	95,420,000	95,420,000	95,420,000	95,420,000	286,260,000
	110P2	2	14층~15층	2	280,029,000	609,428,182	60,942,818	950,400,000	95,040,000	95,040,000	95,040,000	95,040,000	95,040,000	95,040,000	95,040,000	285,120,000
	110P3	3	13층~14층	3	281,103,000	611,724,545	61,172,455	954,0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286,200,000	
110.8900S	110S1	1	1층	1	290,936,000	549,330,909	54,933,091	895,200,000	89,520,000	89,520,000	89,520,000	89,520,000	89,520,000	89,520,000	268,560,000	
	110S2	1	1층	1	290,048,000	547,683,636	54,768,364	892,500,000	89,250,000	89,250,000	89,250,000	89,250,000	89,250,000	89,250,000	267,750,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의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건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합니다.
- 상기 면적 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절사 또는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아파트 출입현관, 계단, 공용복도, 엘리베이터홀, 비상구, 로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실내정원, 게스트하우스-1,2, 공유마켓, 파티룸, 주민운동시설, 재택오피스, 실내용이터, 웰컴라운지, 맘스스테이션-1,2, PM보관소-1,2, 펫케어센터, 창고, 휴게라운지 및 공구보관실, 지하층 계단, 관리사무소, 경비실-1,2,

- 생활폐기물처리장,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우수저조관리, 발전기실/열교환실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않는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실 입주일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선 도래일에 납부한다. 다만,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주택법」 제49조4항 단서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와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 안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본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 및 시행사,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신탁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불가)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 표기)		64A	64B	64C	64D	84A	84B	84C/84C1	84D	84E	84F	98A	98B/98B1	98C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	1	1	1	1	1	1	1	-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1	1	1	-	1	1	1	-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1	-	1	-	-	-	-	-	-	-	3	
	중소기업 근로자	1	-	-	1	1	1	-	-	-	1	-	-	-	5	
	북한이탈주민	1	-	-	-	-	1	-	-	-	-	-	-	-	2	
	우수선수	1	-	-	-	-	1	-	-	-	-	-	-	-	2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	1	-	-	-	-	-	-	-	-	-	-	-	-	1	
	장애인	인천광역시	1	1	-	1	1	1	-	-	1	1	-	-	-	7
		서울특별시	1	-	-	0	-	1	-	-	-	-	-	-	-	2
		경기도	1	-	-	1	-	1	-	-	-	-	-	-	-	3
소 계		11	2	-	6	4	9	1	2	3	4	-	-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50%)	6	1	-	3	2	5	1	1	2	2	2	5	2	32	
	서울특별시·경기도(50%)	5	1	-	3	2	4	-	1	1	2	2	5	2	28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4	1	11	7	17	2	4	6	7	-	-	-	7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	-	2	1	2	-	-	1	1	1	3	1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21	4	1	12	8	18	2	4	6	7	-	-	-	83	
합 계		66	12	2	37	24	55	6	12	19	23	5	13	5	27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td> <td>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추천기관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우수선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35조 1항 22호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7항제4호에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고령자, 장애인 또는 인터넷 취약자는 구비서류 차감 후 견본주택 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p>※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비고	<p>■ 자녀기준</p> <p>- (③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 (③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p> <p>*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p> <p>*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p> <p>*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309 502 2132 957">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하는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data-bbox="309 1101 2132 1236">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비고	<p>■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p>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개울,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② 부양가족수</td> <td rowspan="3">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8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p>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p> <p>■ 자산기준</p> <p>-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p> <p>- 자산보유기준</p>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증명서</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12.30.(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133번길 1
일반공급	1순위	2024.12.31.(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1.02.(목) 09:00~17:30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p>-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p>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등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8.(수) ~ 2025.01.17.(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1.0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5.01.08.(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 또는 카카오톡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5.01.19.(일) ~ 2025.01.21.(화) 10:00 ~ 17:00 • 장소 -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33번길 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격확인 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예비입주자 포함)	2025.01.11.(토) ~ 2025.01.15.(수) / 5일간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33번길 1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 입주자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당사 홈페이지(https://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 예비 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내 제출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인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발급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인천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상 등 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당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건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발급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발급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발급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② 세무서

업자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구 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 사항 등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table border="1" data-bbox="280 1157 2027 1340">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8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1.19.(일) ~ 2025.01.21.(화) / 3일간 10:00 ~ 17:00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33번길 1)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농협은행	301-0356-9877-21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계좌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공급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유상운선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양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 7401동 301호 홍길동 → 74010301홍길동)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 시 제외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 건본주택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건본주택 비치(※ 6억 초과주택에 한함)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신청서 추가사항	위임장	○	(청약신청자)	※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불가 •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청약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현장수납 불가) 납부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범위 내에서 60%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금융기관의 알선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의 개인(대출 미신청 및 대출 부적격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에서 알선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이자후불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자후불제는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에서 알선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 일까지의 대출이자(사업주체가 대납하며(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대출이자만 해당됨), 입주 시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서류 미제출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다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

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모든 분양수입금의 수납은 지정된 분양 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보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합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 · 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부대 ·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펙케어센터, 맘스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재택오피스, 실내놀이터, 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마이너스 옵션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잔금(80%)
64A	3,377,000	337,700	337,700	2,701,600
64B	2,985,000	298,500	298,500	2,388,000
64C	5,410,000	541,000	541,000	4,328,000
64D	4,239,000	423,900	423,900	3,391,200
84A	3,147,000	314,700	314,700	2,517,600
84B	3,709,000	370,900	370,900	2,967,200
84C	84C	3,987,000	398,700	3,189,600
	84C1	3,818,000	381,800	3,054,400
84D	3,744,000	374,400	374,400	2,995,200
84E	3,383,000	338,300	338,300	2,706,400

	84F		5,275,000		527,500		527,500		4,220,000
	98A		6,069,000		606,900		606,900		4,855,200
98B	98B		4,050,000		405,000		405,000		3,240,000
	98B1		4,041,000		404,100		404,100		3,232,800
	98C		1,406,000		140,600		140,600		1,124,800
110S	110S1		8,532,000		853,200		853,200		6,825,600
	110S2		4,725,000		472,500		472,500		3,780,000
110P	110P1		5,248,000		524,800		524,800		4,198,400
	110P2		6,627,000		662,700		662,700		5,301,600
	110P3		5,180,000		518,000		518,000		4,144,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	농협은행	301-0356-9884-61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중도금, 잔금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7401동 301호 홍길동 : 740103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 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한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외부환경 요인(우천, 강풍 등)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분할 규격 및 입면 디자인,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외부환경 요인(우천, 강풍 등)에 따라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1,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설치)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 및 확장공사비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설치내역

구분	항목	확장 시 기본 제공	확장 시 유상 옵션 선택 시		
공통	마감재 특화	주방 상판, 벽+사각싱크볼	주방 벽 타일 + 상판 인조대리석 + 기본 싱크볼	• 주방 상판, 벽 엔지니어드스톤 + 사각싱크볼	
		거실 아트월	포세린타일(600*1200)	• 세라믹타일(1200*2800)	
		디자인 패널	실크벽지	• 쇼파 뒷벽, 복도 양측벽 디자인 패널(900*2440*4T) ※ 84 타입만 해당 • 쇼파 뒷벽, 복도 양측벽 디자인 패널(1200*2400*8T) ※ 64, 98, 110 타입만 해당	
		바닥 포셀린 타일	강마루	• 거실, 주방 복도 바닥 포셀린 타일(600*600)	
	조명 특화	거실 조명	기본 조명기구	• 거실 직간접조명(2면), ※ 디밍기능 없음	
		주방 조명	미설치	• 주방 라인조명	
	욕실 특화	복합환풍기	욕실1	일반 환풍기(환기용)	• 온풍 + 제습 + 환기 + 드라이
			욕실2		• 온풍 + 제습 + 환기 + 드라이
			욕실3		• 온풍 + 제습 + 환기 + 드라이 ※ 110S1, 110S2 타입만 해당
		비데	욕실1	미설치	• 비데
욕실3	미설치		• 비데 ※ 110S1, 110S2 타입만 해당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자동중문	미설치	• 금속 프레임 / 컬러 사틴패턴 유리 ※ 84B, 98A, 98B, 98B1, 110S1 외 타입만 해당	
		폴딩 수동중문	미설치	• 금속 프레임 / 컬러 사틴패턴 유리 ※ 84B, 98A, 98B, 98B1, 110S1 타입만 해당	
	현관 팬트리	미설치	• 경도어 + 시스템 선반 ※ 98A는 PET도어 + 시스템선반 적용		
	신발장	기본 신발장(1개소)	• 경도어 신발장 1개소		
주방	장식장	미설치	• 84B, 84F 타입 조명형 홈바 / 98B, 98B1 타입은 조명형 장식장 ※ 84B, 84F, 98B, 98B1 타입만 해당		
	아일랜드장	미설치	• 지정PET,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상부플랩장	기본 유리 수납장	• 지정PET, 컬러패턴 하프미러 도어 ※ 64, 84 타입 브론즈 / 98, 110 타입 그레이		
	냉장고장	일반형 수납장	오픈공간+벽지시공	• 지정PET, 수납장 ※ 64A, 64B, 64C, 64D, 84B, 84F, 98B, 98B1, 110P1 타입은 발코니확장 시 제공 ※ 추가선택품목 냉장고 가전 선택 시 냉장고장 일반형 수납장 선택 불가	
		3도어형 수납장		• 지정PET, 수납장	
주방/복도	팬트리	미설치	• 가구도어 + 시스템선반		
안방	워크인 드레스룸 + 파우더장	미설치	• 가구(유리도어), 자립식 선반 / 은경 + 디밍조명 + 콘센트, 하부장, 지정PET + 엔지니어드스톤		
	안방 불박이장	미설치	• 슬라이딩 도어 + 여닫이 도어, 지정PET ※ 98A, 98B, 98B1, 98C, 110P1, 110P2, 110P3, 110S1, 110S2 타입만 해당		

침실	침실1 또는 침실2 불박이장(1개소)	미설치	• 지정PET, 측면 은경 + 멀티고리
특화	공간특화 (알파룸→팬트리, 장식장)	84A	알파룸
		98A	알파룸
			• 현관팬트리(경도어+가벽+시스템선반)+팬트리(PET도어+가벽+시스템선반)+조명형 홈바 ※ 신발장 중복 선택 불가
			• 복도팬트리(PET도어+가벽+시스템선반)+팬트리(PET도어+가벽+시스템선반)+조명형 홈바

■ 공급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64A	64B	64C	64D	84A		84B	84C		84D	84E	
							84A	84A 공간특화		84C	84C1			
공통	마감재 특화	주방 상판, 벽 + 사각싱크볼	3,270,000	3,490,000	3,800,000	3,450,000	4,710,000	4,710,000	4,830,000	5,110,000	5,110,000	5,260,000	5,280,000	
		거실 아트월	710,000	730,000	720,000	730,000	900,000	900,000	820,000	890,000	890,000	870,000	860,000	
		디자인 패널(900*2440*4T)	-	-	-	-	3,470,000	2,910,000	4,160,000	3,620,000	3,620,000	3,430,000	3,640,000	
		디자인 패널(1200*2400*8T)	2,230,000	2,550,000	2,260,000	2,380,000	-	-	-	-	-	-	-	-
		바닥 포셀린 타일	1,710,000	1,670,000	1,750,000	1,770,000	2,240,000	2,750,000	1,990,000	2,050,000	2,050,000	2,200,000	2,190,000	
	조명 특화	거실 조명	930,000	1,110,000	930,000	1,110,000	1,130,000	1,130,000	1,520,000	1,090,000	1,090,000	1,130,000	1,080,000	
		주방 조명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30,000	270,000	230,000	250,000	250,000	280,000	240,000	
	욕실 특화	복합환풍기	욕실1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욕실2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욕실3	-	-	-	-	-	-	-	-	-	-	-
비데		욕실1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욕실3	-	-	-	-	-	-	-	-	-	-	-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자동중문	1,490,000	1,490,000	1,510,000	1,490,000	1,560,000	1,560,000	-	1,560,000	1,560,000	1,560,000	1,500,000	
		폴딩 수동중문	-	-	-	-	-	-	2,470,000	-	-	-	-	
	현관 팬트리	-	-	-	-	-	-	3,610,000	-	-	-	2,320,000		
주방	신발장	2,080,000	2,340,000	1,490,000	2,270,000	1,750,000	-	-	2,110,000	2,110,000	2,000,000	-		
	장식장	-	-	-	-	-	-	2,160,000	-	-	-	-		
	아일랜드장	1,580,000	1,580,000	1,590,000	1,570,000	-	-	2,200,000	-	-	-	-		
	상부플랩장	1,550,000	1,780,000	640,000	1,860,000	1,810,000	1,810,000	1,930,000	1,900,000	1,900,000	2,100,000	1,700,000		
	냉장고장	일반 수납장	-	-	-	-	2,320,000	2,320,000	-	2,090,000	2,090,000	2,320,000	2,220,000	
3도어 수납장		310,000	310,000	320,000	310,000	2,730,000	2,740,000	310,000	2,500,000	2,500,000	2,740,000	2,610,000		
주방/복도	팬트리	2,430,000	-	1,940,000	1,850,000	-	-	-	-	-	-	1,940,000		
안방	워크인 드레스룸 + 파우더장	4,060,000	3,510,000	6,420,000	3,600,000	4,310,000	4,310,000	4,480,000	5,020,000	5,020,000	4,500,000	6,030,000		
	안방 불박이장	-	-	-	-	-	-	-	-	-	-	-		
침실	침실1 또는 침실2 불박이장(1개소)	1,910,000	1,910,000	1,910,000	1,910,000	2,390,000	2,390,000	2,190,000	2,390,000	2,390,000	2,390,000	2,290,000		
특화	공간특화(알파룸→팬트리, 장식장)	-	-	-	-	-	7,580,000	-	-	-	-	-		

구분			84F	98A		98B		98C	110S		110P		
				98A	98A 공간특화	98B	98B1		110S1	110S2	110P1	110P2	110P3
공통	마감재 특화	주방 상판, 벽 + 사각싱크볼	4,790,000	5,080,000	5,080,000	5,130,000	5,260,000	4,900,000	5,780,000	4,760,000	8,110,000	5,840,000	6,000,000
		거실 아트월	920,000	1,020,000	1,020,000	1,100,000	1,100,000	970,000	990,000	940,000	940,000	980,000	940,000

조명 특화	디자인 패널(900*2440*4T)		5,120,000	-	-	-	-	-	-	-	-	-	-	
	디자인 패널(1200*2400*8T)		-	3,920,000	3,410,000	5,530,000	5,530,000	3,890,000	6,250,000	8,700,000	12,560,000	5,470,000	10,160,000	
	바닥 포셀린 타일		2,330,000	2,610,000	3,280,000	2,520,000	2,520,000	2,390,000	2,690,000	2,670,000	2,920,000	2,910,000	2,840,000	
	거실 조명		1,660,000	1,170,000	1,170,000	1,710,000	1,710,000	1,100,000	1,170,000	1,100,000	1,100,000	1,150,000	1,100,000	
	주방 조명		200,000	310,000	280,000	350,000	350,000	200,000	260,000	170,000	290,000	270,000	260,000	
	욕실 특화	복합환풍기	욕실1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욕실2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욕실3	-	-	-	-	-	-	450,000	450,000	-	-	-
		비데	욕실1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욕실3	-	-	-	-	-	-	160,000	160,000	-	-	-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자동중문	1,560,000	-	-	-	-	1,570,000	-	1,560,000	1,560,000	1,560,000	1,560,000	
		폴딩 수동중문	-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	2,700,000	-	-	-	-	
	현관 팬트리		-	2,600,000	2,600,000	3,290,000	3,290,000	4,190,000	1,890,000	2,400,000	2,590,000	2,560,000	2,730,000	
	신발장		2,270,000	2,240,000	2,240,000	-	-	-	-	-	-	-	-	
주방	장식장		2,360,000	-	-	3,230,000	3,230,000	-	-	-	-	-	-	
	아일랜드장		2,390,000	-	-	2,650,000	2,640,000	-	-	-	2,670,000	2,680,000	2,010,000	
	상부플랩장		1,900,000	2,920,000	2,920,000	2,660,000	2,660,000	2,120,000	3,050,000	1,810,000	670,000	1,480,000	1,290,000	
	냉장고장	일반 수납장	-	2,380,000	2,390,000	-	-	2,050,000	2,230,000	2,200,000	-	2,320,000	1,990,000	
		3도어 수납장	330,000	2,810,000	2,820,000	340,000	340,000	2,420,000	2,620,000	2,590,000	400,000	2,740,000	2,380,000	
주방/복도	팬트리		-	-	-	-	-	1,910,000	2,380,000	2,440,000	2,400,000	2,670,000	2,420,000	
안방	워크인 드레스룸 + 파우더장		3,940,000	5,780,000	5,780,000	4,280,000	4,280,000	4,520,000	7,100,000	5,150,000	6,510,000	5,640,000	6,090,000	
	안방 불박이장		-	4,300,000	4,300,000	4,300,000	4,300,000	3,950,000	3,950,000	3,790,000	4,140,000	4,280,000	4,190,000	
침실	침실1 또는 침실2 불박이장(1개소)		2,390,000	2,390,000	2,390,000	2,390,000	2,390,000	2,390,000	2,000,000	2,000,000	2,390,000	2,390,000	2,390,000	
특화	공간특화(알파룸→팬트리, 장식장)		-	-	9,030,000	-	-	-	-	-	-	-	-	

- 주택형별로 추가 별도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kr>)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타입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일반형	고급형	
시스템에어컨	삼성전자	64A	2대	거실+안방	2,810,000	3,530,000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5,010,000	6,400,000	
		64B	2대	거실+안방	2,570,000	3,290,000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4,730,000	6,120,000	
		64C	2대	거실+안방	3,130,000	3,910,000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4,910,000	6,370,000	
		64D	2대	거실+안방	2,570,000	3,290,000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4,810,000	6,200,000	
		84A	3대	거실+주방+안방	3,960,000	5,170,000	※ 84A 타입은 공간특화(알파룸→팬트리,장식장)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알파룸 시스템에어컨 선택 불가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690,000	8,60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910,000	10,170,000		
		84B	3대	거실+주방+안방	3,890,000	5,120,000	※ 84B 타입은 알파룸 없음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8,420,000			

84C	3대	거실+주방+안방	4,200,000	5,43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280,000	9,18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110,000	10,370,000	
84C1	3대	거실+주방+안방	4,180,000	5,40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330,000	9,24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220,000	10,480,000	
84D	3대	거실+주방+안방	3,960,000	5,17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000,000	8,91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980,000	10,240,000	
84E	3대	거실+주방+안방	4,100,000	5,310,000	※ 84E 타입은 알파룸 없음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640,000	8,550,000	
84F	3대	거실+주방+안방	3,890,000	5,12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20,000	8,48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530,000	9,840,000	
98A	3대	거실+주방+안방	4,130,000	5,360,000	※ 98A 타입은 공간특화(알파룸→팬트리,장식장)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알파룸 시스템에어컨 선택 불가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720,000	8,62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070,000	10,300,000	
98B	3대	거실+주방+안방	3,760,000	4,99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750,000	8,65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960,000	10,200,000	
98B1	3대	거실+주방+안방	3,930,000	5,16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690,000	8,60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940,000	10,180,000	
98C	3대	거실+주방+안방	4,000,000	5,23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860,000	8,76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980,000	10,220,000	
110S1	3대	거실+주방+안방	5,530,000	6,75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320,000	10,24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9,290,000	11,510,000	
110S2	3대	거실+주방+안방	5,190,000	6,410,000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520,000	9,44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450,000	10,660,000	
110P1	3대	거실+주방+안방	5,020,000	6,24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8,660,000	10,920,000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680,000	12,240,000	
110P2	3대	거실+주방+안방	5,090,000	6,32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8,360,000	10,610,000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250,000	11,740,000	
110P3	3대	거실+주방+안방	4,850,000	6,070,000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8,540,000	10,800,000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80,000	12,05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에어컨 설치를 위한 기본형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안방)가 벽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냉매배관은 매립되어 실외기실로 연결되며, 드레인 배관은 매립되어 가까운 바닥 배수로 연결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타입	공급금액		비고
주방	냉장고, 냉동고 및 김치냉장고	전 타입	LG	4,910,000	BC1L2AA(냉장)+BC1F2AA(냉동)+BC1K3AA(김치냉장고) MIST(글라스) 베이지
			삼성	5,110,000	RR40C7995AP(냉장)+RZ34C7965AP(냉동)+RQ34C7945AP(김치냉장고) 글램화이트
	식기세척기		LG	1,120,000	DIB22S
			삼성	890,000	DW60T7065SS
	오븐		LG	360,000	MZ385EBT1
			삼성	350,000	NQ36A6555CK
	하이브리드 쿡탑		하츠	240,000	IH-366DTL
			쿠첸	270,000	CEO-B3SF3A0NBA
	독립형 후드		하츠	210,000	스퀘어 아일랜드(ISH-46S)
				510,000	아일랜드 더블 스퀘어(IDS-30S)
	음식물 처리기		(주)티엠비	1,320,000	Verde-001
			제이앤에이치컴퍼니	1,580,000	에코업
안방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주)아르펠	120,000	※ 84C1, 110P2, 110S1, 110S2 타입은 선택 불가	
		(주)씨넷	130,000		

- 냉장고장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간은 고객님이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품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오븐,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선택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전	계약 시	2025.05.15.	입주지정일	농협은행	301-0356-9884-61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7401동 302호 홍길동 : 74010302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

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별도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별도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추가선택 품목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별도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품질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욕실/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화장실/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및 배수 슬리브(바닥배수 드레인 및 마감커버 제외) 바닥난방 + 시멘트모르타르(난방배관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신발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단열재 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전자식스위치류, 스위치/콘센트류 (시공가능한 위치만 설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소방감지기, 발코니 콘크리트면 처리,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선 등
욕실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스위치, 콘센트, 배기덕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콕탑, 싱크절수기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주방배기 덕트
가구	신발장, 냉장고장, 가구도어(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해당없음
도어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기타사항	벽 부착 수전류, 선택하는 옵션품목 일체 포함	외부 발코니 난간대,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전열교환기, 환기덕트, 소방관련 설비배관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총 분양가격에 마이너스 옵션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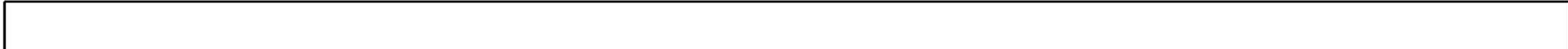
구분(주거전용면적)	64A	64B	64C	64D	84A	84B	84C	84C1	84D	84E
기본선택	27,554,000	27,351,000	29,497,000	27,364,000	35,522,000	35,688,000	38,105,000	38,105,000	35,591,000	35,538,000

(마이너스 옵션금액)	84F	98A	98B	98B1	98C	110S1	110S2	110P1	110P2	110P3
	36,028,000	42,414,000	42,612,000	42,625,000	42,529,000	49,889,000	49,737,000	48,161,000	47,970,000	48,154,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 기본형 공급금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공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공급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감소분을 공급대금 잔금에서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자재발주 문제 등으로 추가신청 및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 및 추가선택품목의 신청(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 마감과 관련된 품목/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본형(비확장) 기준이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공사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인접세대 주민과의 불화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단선 여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p>공통</p>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며,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또는 법률개정이나 행정명령, 민원, 공사중지 처분(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 원자재파동, 문화재발굴, 전염병의 유행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지, 하천,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학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검단신도시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하천, 학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 진행지구로 입주 후 주변단지 신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연장발표,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북권광역급행철도(GTX-D) 추진,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검단~경명로간도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국지도98 호선(도계~ 마전구간)도로 등 여타 추진 중에 있는 일체의 교통개선 계획과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 부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내의 교육시설 조성 등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공원, 하천, 상업시설, 공동주택, 학교 건설예정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조망권 및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검단신도시 동남측 김포공항이 위치하며,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차량진·출입구, 학원차량 대기소,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열교환실, 빗물저류조 등의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 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10P1, 110P2, 110P3, 110S1, 110S2 의 옥외공간은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오픈발코니가 제공되는 세대(84C1)는 개별세대만 출입가능하며 세대별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풍파로 인한 해당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최하층에 복층형 하우스, 최상층에 펜트하우스가 구성되며, 기준층 세대와 내부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하2층(11대) 일부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과 분리되어 사용되므로 아파트 입주민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 계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풍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옹벽, 도로, 교량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의 따라 위치 및 개수, 색상, 디자인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설치된 로고의 개수 및 위치, 브랜드 디자인, 명칭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일부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조감도 및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식재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방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식재 여건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일정시점 이전에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제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옵션선택품목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지는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AA등급) 예비인증을 득하였으며,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 학교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 조건부 인근학교 배치 가능(검단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중학교 : 학교군 내 배치 가능(학교군 내 과밀예상-지정중학교 배치 가능) 고등학교 : 학교군 내 배치 가능(학급 증설 시)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인근 개발사업지 추이에 따라 배치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당해 지구의 학교 및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설학교 설립계획 변경 시, 당해지구 내 학교 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진행 시 참고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설립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학생배치 사항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사업지 인근의 '(가칭)검단12초'는 신설추진이 불투명하며, AA32블록은 인근의 검단초등학교에 배치예정입니다.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시교육청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우리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669세대로,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은 7401동 뒤편 중앙광장 지상에 위치)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 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및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669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다함께돌봄센터는 7408동 지하1층에 위치)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단지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p>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사업승인(준공) 이전에 용도변경을 하여야 사업승인 이후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주차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 됩니다.
<p>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상의 미표시된 면적(대지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에 변전소, 송전선로(철탑포함), 가압장, 배수지, 존치시설(중중요역, 영어마을 등), 문화재, 군부대, 매립지 수송도로, 묘지공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물류유통용지, 종교시설용지, 특수학교 및 각종 도시시설물 등이 계획 또는 위치되어 있는 바,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문제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발생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근 단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교통장애 발생 및 주거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 하천 등 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건본주택 및 기타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천검단신도시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사면처리,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높이 및 옹벽 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주변도로간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여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사생활침해 및 빛공해 등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동측 초등학교, 공동주택 계획 / 단지 남서측 하천 계획 / 단지 북측 근린공원 계획 / 단지 동측 공동주택, 어린이공원 계획 / 단지 동측, 남동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 먼지, 눈부심, 교통혼잡,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유해시설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소음측정 및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본 단지에서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p>단지 내부여건</p>	<p>단지배치 및 지상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과 차량차단기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는 입주인 및 인근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경사로, 선형, 폭, 조정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므로 인근 세대(7401동)는 시야차단,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청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에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또는 추가설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시설, 어린이,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1개층(7401동,7411동), 2개층(7402동,7403동,7404동,7408동,7409동,7410동), 3개층(7405동, 7406동, 7407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입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외부의 지정석재 및 지정강판, 지정판넬 혼합마감입니다.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시 외부 입면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생성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의 기둥, 벽체 등은 색채디자인 적용으로 일부 석재 및 석재뿔질로 시공됩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및 보관장소는 수집운반차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상부 일부 동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저층부[1개층(7401동,74011동), 2개층(7402동,7403동,7404동,7408동,7409동,7410동), 3개층(7405동, 7406동, 7407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관리업체의 입주규정에 따라 사다리차가 이용 가능한 동이더라도 엘리베이터 이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및 문주,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와 같은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중계기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7401동, 7403동, 7404동, 7407동, 7411동 아파트 옥상층
 -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예정 위치: 7401동, 7403동, 7404동, 7407동, 7411동 아파트 옥상층 및 7404동, 7407동, 7410동, 7411동 아파트 PIT층
- 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등이 돌출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동별 소방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및 후면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근 공항과 인접된 여건으로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포함) 설치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항공 장애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동의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p>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웬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979대, 근린생활시설 지하 11대, 총 990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 조업주차 2대(지하) 미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제연헬륨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등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지하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7401동~7407동은 지하2층~지하3층이 연결되어 있고, 7408동~7411동은 지하1층~지하2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421 422 2065 566"> <thead> <tr> <th>구분</th> <th>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유효높이</th> <th>주차면 높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지하1층</td> <td>2.7m</td> <td rowspan="3">2.1m 이상</td> <td>택배차량 진입가능</td> </tr> <tr> <td>지하2층</td> <td>2.7m</td> <td>택배차량 진입가능</td> </tr> <tr> <td>지하3층</td> <td>2.3m</td> <td>택배차량 진입불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및 제연헬륨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 입주 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인근세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할 수 없고,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주동마다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2층 공동주택 주차장에 각동 코어별로 1개소가 설치됩니다. 단, 추후 본 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상부 및 램프 벽면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동등 이상의 품질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전기차충전시설 급속 6개소, 완속 51개소 설치)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 등에 따른 충전방향 민원발생시 관계법령 및 입주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민원 해결을 해야 하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유효높이	주차면 높이	비고	지하1층	2.7m	2.1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2층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3층	2.3m	택배차량 진입불가
구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유효높이	주차면 높이	비고													
지하1층	2.7m	2.1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2층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3층	2.3m		택배차량 진입불가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2개소, 방재실, MDF실, 용역원실(남, 여 각 1개소), 맘스스테이션, 모빌리티스테이션, 실내정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함께돌봄센터, 주민회의실, 샤워실(남, 여 각 1개소), 탈의실(남, 여 각 1개소), 작은도서관, 멀티미디어룸), 핏케어센터,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분양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의 재질, 디자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이미지 및 견본주택의 부대시설 모형, 마감, 시설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포함)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지붕에는 옥상 녹화가 적용되어 있어 누수하자를 고려하여 지붕 점검구 대신 외부 점검용 방호울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모빌리티스테이션, 맘스스테이션, 용역원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지하층에 설치되며, 일부 시설은 환기 및 채광창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p>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의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분진,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 개소,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본 공사시 변동 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5항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자금(「주택도시자금법」에 따른 주택도시자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 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84A, 98A 타입이 설치되며, 건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로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계단, 옹벽 및 조경석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천장 환기구,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등기구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의 품질로 적용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본 시공 시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 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단위세대	세대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확장 발코니에는 본 시공 시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도면, 건본주택과 달리 발코니 길이 및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건본주택과 상이하며 단열재마감, 실 사용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및 도면에서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발코니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세대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인접세대 하자 발생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계약자 본인 책임입니다. • 비확장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비확장의 경우, 하부 세대의 천장부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천장형 에어컨 위치(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고 일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 부분과 접한 확장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벽체 돌출이나 우물천장 깊이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샷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벽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본 시공 시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정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세대 내에(84C1타입은 오픈발코니에 설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및 모형,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기준에 따라 실외기실에 유지보수를 위한 문이 설치가 되었으며, 해당 문의 이용 용도 특성상 실외기실 전면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아 협소하며 가전(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배치로 이용에 제약 및 불편이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 또는 세탁선반의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폭, 높이, 용량(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설치되는 목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보호대가 전면 및 후면에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및 다용도실의 단차는 바닥구배에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p>신발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내 일부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단위세대 현관 및 펜트리(일부)에는 미설치 됩니다.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및 테라스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 되는 우수관 및 배수관에 의해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다용도실 및 테라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동별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측면 또는 위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부분의 상부장은 깊이나 높이 또는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현관,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PD, 다용도실)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중 일부는 이동식이 아닌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벽면 일부 경량벽체에 과도한 크기의 TV를 설치할 경우 별도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파손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천장 등의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불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 오배수 배관은 당해층 (벽배수) 배관 방식이 적용 되었으며, 벽배수용 시스템 양변기가 설치 됩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되며, 각 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세대분전함의 경우 가구 및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불가함으로 복도, 침실, 거실 등 노출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실시공 시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건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창나뉠기,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1개층(7401동,7411동), 2개층(7402동,7403동,7404동,7408동,7409동,7410동), 3개층(7405동, 7406동, 7407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홍보물,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옥외공간(테라스 등)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테라스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세대간벽, 차폐시설물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폴딩형 중문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일부 세대(84B, 98A, 98B, 98B1, 110S1타입)의 경우 열림방향에 따라 개폐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	---

<p>제공 / 전시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P1, 110P2, 110P3, 110S1, 110S2 타입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1개층(7401동,7411동), 2개층(7402동,7403동,7404동7408동,7409동,7410동), 3개층(7405동, 7406동, 7407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와 고층부(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어있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 또는 유상옵션, 전시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p>기계전기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 오배수 배관은 당해층(벽배수) 배관 방식이 적용 되었으며, 벽배수용 시스템 양변기가 설치 됩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세면기 후면, 드레스룸, 펜트리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비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은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직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p>공용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FIX창 일부는 화재시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주동의 형태 및 공용홀의 계획에 따라 세대간의 형평성(엘리베이터홀에서 세대출입문까지의 거리, 창호 설치 유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검산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12024-101-0005600	261,362,29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해당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 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 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인증번호: C-5652-P-2024-0963-7</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p>인증대상: 2024.07.21 ~ 2024.08.31</p> <p>인증기간: 2024.07.21 ~ 2024.08.31</p> <p>인증종류: 1. 일반주택, 2. 공공주택, 3. 대단지 주택, 4. 영농주택</p> <p>인증등급: 1등급</p> <p>인증일자: 2024.09.27</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인증번호: 2024-09-01-051-0</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p>인증대상: 2024.07.21 ~ 2024.08.31</p> <p>인증기간: 2024.07.21 ~ 2024.08.31</p> <p>인증종류: 1. 일반주택, 2. 공공주택, 3. 대단지 주택, 4. 영농주택</p> <p>인증등급: 1등급</p> <p>인증일자: 2024.09.27</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p>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인증번호: 2024-09-01-051-0</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p>인증대상: 2024.07.21 ~ 2024.08.31</p> <p>인증기간: 2024.07.21 ~ 2024.08.31</p> <p>인증종류: 1. 일반주택, 2. 공공주택, 3. 대단지 주택, 4. 영농주택</p> <p>인증등급: 1등급</p> <p>인증일자: 2024.09.27</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p>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p> <p>인증번호: 2024-09-01-051-0</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p>인증대상: 2024.07.21 ~ 2024.08.31</p> <p>인증기간: 2024.07.21 ~ 2024.08.31</p> <p>인증종류: 1. 일반주택, 2. 공공주택, 3. 대단지 주택, 4. 영농주택</p> <p>인증등급: 1등급</p> <p>인증일자: 2024.09.27</p> <p>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p>

■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수시발 인증(공공) (중용) (주)에스엔지니어링 건축공사

1. 각 시의 무결함 발현을 기원합니다.

2. 각 시에서 실험한 「건물내외기밀도 측정」, 「공동주택의 단열성능」,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2조에 의거한 성능평가를 위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mm)

건축물명	공표항목	설계기준	측정결과	비고
인정공인인증서 AS328, 공동주택 건축공사	외기벽	외기벽	합격	합격
	외기창	외기창	합격	합격

3. 시험이 없는 인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우측의 0.02mm를 통하여 인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원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서 1부, 2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24년 1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등급 I	내진능력(MMI 등급)
		VII-0.2112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05,058,857	공사비	건설근로자비용	53,195,888	기계설비	위생기구 설치공사	1,818,087
	기간이자	11,640,070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878,638
	필요적 경비	5,480,065		조적공사	1,616,078		가스설비공사	774,371
	그 밖의 비용	16,222,311		미장공사	3,097,482		자동제어 설비공사	218,844

공사비	토목	계	138,401,303	기계설비	단열공사	1,060,551	그밖의 공중	특수설비공사	1,599,243	
		토공사	2,710,297		방수, 방습공사	2,188,438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		목공사	2,727,131		전기설비공사	9,561,792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4,915,569		정보통신공사	3,602,506	
		옹벽공사	387,185		금속공사	2,087,434		소방시설공사	4,797,730	
		석축공사	-		지붕 및 홀통공사	875,375		승강기공사	2,121,102	
		우수, 오수공사	639,697		창호공사	5,572,101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0,858,021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2,188,438			이윤	8,720,085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85,176		타일공사	2,188,438		계	166,506,493	
		도로포장공사	420,854		돌공사	3,030,146		설계비	3,073,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50,502		도장공사	1,851,756		감리비	4,471,658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262,561		부 대 비	일반분양시설경비	19,021,369
		조경공사	3,871,852		수장공사	3,720,345			분담금 및 부담비	4,794,375
		부대시설공사	841,707		주방용구공사	3,232,155			보상비	-
	공동가설공사	4,040,194	그 밖의 건축공사	2,440,951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8,198,877				
	건축	가시설물공사	993,214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1,178,390	계	39,559,279		
		지정 및 기초공사	4,208,535		급탕설비공사	1,262,561	그 밖의 비용	28,907,625		
		철골공사	-		우수, 배수설비공사	1,515,073	합계	373,374,7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비 가산비 계	11,640,070,153	건축비 가산항목	건축비 가산비 계	28,907,922,200		
	법정 택지이자	4,202,354,304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4,999,879,334		
	취득세	취득세		420,235,430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홈네트워크	8,323,122,960
		교육세		441,247,197		초고속통신특등급	1,680,790,410
	재산세	재산세		88,249,439		에어컨냉매배관	1,543,263,840
		교육세		308,873,038		기계환기설비	3,455,899,020
		재산세 도시지역분		18,757,58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5,006,651,658	
	등기수수료	보수료		348,005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661,180,658	
		인지세		5,101,434,738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196,389,600
	말뚝박기 공사비	3,185,379,343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공사비	1,262,652,30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7,067,505,225			법정초과조경설치비	761,244,180	
지역난방부담금	867,992,491	분양보증수수료		1,016,848,240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수양엔지니어링	(주)세정이에프씨	(주)건일엠이씨
감리금액	2,944,142,300	593,803,100	790,713,000	143,000,000

사업자등록번호	229-81-19550	124-81-49079	202-81-50221	131-81-65529
---------	--------------	--------------	--------------	--------------

• 상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시행사 / 시공사	
상 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222218	160111-000312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사업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33번길 1
	분양문의	☎ 1551-0669
	홈페이지	https://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kr